제조물책임법의 시행에 대한 기업의 입장

소유영 / 제일제당(주) 포장개발팀 팀장

1. 환경의 변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사회환경의 변화들은 모든 기업들로 하여금 제품의 생산, 유통, 영업 등의 기능 및 운영과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발전 또는 생존차원에서 기존방식, 전략 등을 새로운 시각에 맞춰 재평가하고 환경에 맞도록 개선, 개혁되어지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기업환경은 그 변화가 급격할 뿐만 아니라 복잡다양하고 과거와는 전혀 다른 단절성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기만 하고 특히 IMF 상황 하에 있는 우리로써는 시장개방 확대요구와 함께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든 체제에서 생존하기 위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무한노력을 경주하여야만 한다.

그러한 변화 중의 하나로써 최근 6시그마로 대변되는 기업의 품질경영에 대한 관심과 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제조물책임법의 도입 등과 같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이슈들이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7월 13일 재경부와 법무부는 그동안 검토되어 왔던 제조물책임법(PL, PRODUCT LIABILITY)을 공고했다.

제조물책임법은 지난 60년대 미국에서 도입한 이후로 유럽연합과 일본 등 OECD국을 주축으로 한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소비자 보호법으로써 국내에서는 지난 80년대부터 입법논의가 시작되어 그동안 많은 논란을 거듭한 후 새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 법 도입이 추진되어온 결과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기업이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각기 또 다른 변화된 새로운 환경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시점에 와있는 것이다.

2. PL법의 의미와 사례

PL법은 제조물에 결함이 있거나 표시, 안내 등이 부적절하여 생긴 인적 · 물적사고에 대해 그 제조물을 제조하거나 판매에 관여한 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법으로써 제조업체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현행법에 비해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상관없이 제조물에 결함이 있으면 그것을 제조하거

나 판매한 자가 피해보상을 해야하는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보호법으로 결국은 결함이나 피해에 대하여 제조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점과 손해가 발생한 사실, 손해와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했던 기존의 것과는 달리 소비자는 결함이 있었다는 것만을 증명하면 된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입증부담을 현저히 경감함으로써 소비자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기업에 있어서는 경쟁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법이다.

최근 화제가 되었던 미국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담배 PL 소송은 대표적인 PL법 관련사례로 꼽을 수 있다.

미국의 5대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PL소송에서 흡연피해자들은 필립모리스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240조원에 이르는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고 미국 담배회사들은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게되었다고 한다.

필립모리스와 관련된 소송에서 미법원은 15살부터 담배를 피우다 폐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그 이유에 대해서,

첫째, 일반 소비자의 기대를 위반하는 제품을 제조한 것

둘째, 1969년 이전에는 흡연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경고하지 않은 점

셋째, 따라서 1969년 이전의 담배판매행위는 고의적인 속임수에 의한 사기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시점부터 담배경고문이 붙기 시작한 69년까지를 피해기간으로 산정, 피해자에게 2,650만달러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한다.

또한 제품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례로써 미국 내에서는 어린이들이 라이터를 쉽게 켜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인 Child Safety Lock이 달려있지 않은 일회용라이터는 판매되지 못하며 실제로 지난 93년 미국에 라이터를 수출하던 국내 중소업체는 한 소비자가 라이터를 켜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어 10만3천달러의 손해배상을 지불했다.

단 2달러짜리 일회용라이터를 판 대가로는 실로 엄청난 손해를 본 셈이다.

이와 같이 PL법은 제품자체의 결함 뿐만 아니라 표시, 안내의 부적절함까지도 피해보상의 범주에 포함시키게 되므로써 제조업체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이 틀림없다.

3. PL법의 파급효과

PL법의 시행에 따라 기업의 생산, 판매, 유통 등 모든 기업활동과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 소비자 행동 등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거론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PL법과 관련된 소송 및 피해보상이 증가할 것이고 그와 관련된 회사인력 자원의 소모와 비용의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74년 1,600여건이던 소송건수가 90년에는 19,500여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물론 미국은 소송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우리와는 문화적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기업으로써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부정적 요소로써 미국에서도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제조물책임 소송의 남용이 우려되는 일이다.

198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많은 미국업체가 제조물책임 소송에 휘말려 문을 닫았는데 중소형 항공기 제조업체가 그 대표적인 예이며, 최근에는 실리콘유방확대제 관련소송으로 Dow-Corning사가 회사정리를 신청하였다 한다.

결국 철저한 준비와 기술수준의 향상없이는 기업으로써는 소송에 따르는 문제점 뿐만 아니라 기업의 존폐까지도 달려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겠다.

두 번째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제품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안 도입 초기에는 발생할지도 모르는 예측불가능한 제품결함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든가 제품설계의 완벽성을 추구한다든가 하는 보완책 마련을 위하여 신제품 개발의 지연 또는 위축 등의 부정적 현상을 겪게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품질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완벽한 품질이 아니면 사소한 결함 또는 피해로도 해당제품 뿐만 아니라 기업이미지에도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써는 여태까지의 품질설계, 제품설계 방식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워지며 그에 따른 대비책을 부단히 개선하고 개발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품의 안전성의 증진을 통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가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저가상품(LOW PRICE, LOW QUALITY)의 수입억제효과도 수반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산업 전반적인 분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포장산업 분야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포장은 소비자가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상품요소이며, 식품, 생활용품의 경우처럼 포장에 의해 제품의 유통기간, 사용상의 기능, 편리성과 같은 제품의 가치를 창출해 내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하다 하겠다.

따라서 포장분야에 있어서도 포장원료물질의 위생안전성, 포장재 가공상의 위해요소, 포장상품의 사용기능상의 안전성 등과 같이 원료에서 포장재의 가공생산, 포장의 설계 및 사용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연관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와 아울러 기술수준의 향상이 요구된다 하겠다.

4. PL법 도입에 대한 쟁점

PL법은 국경없는 세계시장에서의 경쟁과 글로벌스탠다드를 추구해야 할 우리의 현실에서 법자체의 필요성 유무에 대한 선택의 여지는 없어보인다.

그러한 관점에서의 쟁점은 도입시가와 결함 및 피해에 대한 입증(판단)이다.

사실 미국은 이미 30여년 전에 이 법을 도입했지만 일본의 경우는 30여년간 입법 논의 끝에 94년도에 도입되었다.

그만큼 현재의 기술수준 및 사회,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 등이 문제의 핵심에 있다고 보여진다.

이 두가지 쟁점에 대하여 그동안 공청회나 신문지상을 통해 제시된 문제점 및 제안을 보아도 현재로써는 뚜렷한 묘안이 없는 것 같다.

결국은 산업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켜 품질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을 어떻게 하면 시기적절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착륙시킬 수 있느냐가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에 있어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소비자와 기업간의 이익의 조정을 통하여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조화롭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5. 품질경쟁력 향상만이 PL법에 대한 대응책

PL법과는 그 의미가 다르기는 하지만 최근 기아자동차는 잘 나가는 인기차종인 카니발에 대하여 리콜조치를 하였다.

이러한 리콜조치의 배경 또는 평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리콜조치를 한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그만큼 기업은 자사제품 품질과 안전성 개선에 대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 소비자에 대한 품질의 투명성과 함께 대고객 신뢰도를 높여야만 생존할 수 있는 환경에 와있는 것이다.

따라서 품질경쟁력 향상만이 PL법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으며, 그 방법에 있어서 최근 선진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6시그마 운동과 같이 거의 완벽한 품질을 추구하여야 하고 그 범위도 비단 생산분야 뿐만 아니라 설계, 원재료, 가공, 검사, 유통표시 등 제품의 설계에서 최종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완벽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 뿐만 아니라 그 전방에 있는 레진이나 종이 등과 같은 원재료를 생산하는 기업, 또 그것을 가공 · 생산 · 납품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PL법 대응을 위한 품질경쟁력 확보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다.

5-1. 설계단계에서의 안전성 구축

제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위배되거나 예견되는 결함의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의 기준과 그 기준에 의해 검증된 안전성에 관련된 과학적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5-2. 제조단계의 원칙과 객관성 확보

제조단계에 있어서도 모든 결함의 원인요소를 배제하여야 함은 물론 품질과 관련된 모든 원칙을 준수하고, ISO 9002, HACCP 등과 같이 공인기관에서 인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품질보증에 대한 객관성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5-3. 그밖에 유통부문 및 물류부문

그 외의 부문의 경우 기본과 원칙을 수립하고

정해진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과 아울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사용상 또는 취급상의 주의지시, 안내에 대한 항목도 여타 다른 것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하겠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 시점의 이슈 중의 하나는 세계화이다.

현 우리나라의 IMF 시대가 시장자본주의의 세계화 과정 중의 하나라고 하면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여부에 대한 논의는 소비자 보호와 아울러 산업전반에 걸친 품질주의와 경쟁력에 대한 세계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세계화에는 국가도 국경도 없다고 한다. 그것은 지금의 우리가 처해있는 환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리 생소한 말이 아니다.

서울의 어느 매운탕집에는 주인이 주방유리창에 '손님이 짜다면 짜!' 라는 문구를 커다란 붓글씨로 써놓고 장사를 한다고 한다.

이제 품질은 사내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자나 관리자가 결정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모토롤라의 컨설턴트 로시아 노위츠는 "21세기의 KEY WORD는 품질이다"라고 했고 이제 모든 것은 소비자의 판단에 달려있다. 또한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쌓아나가지 못한다면 생존하지 못할 것이다. ko

BLOW 용기 제조 전문업체

취급품목
- CHEMICAL 용기
- WAX 용기
- 위험물 용기
- 각종 액체 포장용기

한석유화(주)

本社 :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79
TEL : 02-799-3100, FAX : 02-798-7250
工場 : 인천 남동구 고잔동 700-6(125B 7L)
TEL : 032-819-2011, FAX : 032-819-2016